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163호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4월 28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현행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을 「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161호)하면서, 현행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공공기관의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조문을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하여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기관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2 신설)

* 현행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8조의4 이관 조문

3. 의견제출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소상공인정책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의 “정보공개-행정·입법예고”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
(전화 : 042-481-4576, Fax : 042-472-6958)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
일부 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) ① 공공기관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에서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신 설></p> | <p>제7조의2(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) ① 공공기관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</p> <p>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에서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.</p> |